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연구팀장 김선우[6576] 팀원 윤영섭[6580]/ E-mail : kmarbrv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15642호

시행일자 2024. 3. 1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3호 (2024.03.07.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4호 (2024.03.07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’ 및 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’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별표 1의 제740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
- 별표 1의 제937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
- 별표 3의 제22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

□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별표의 제24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
-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를 신설

첨부

- 1)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(23년12차)_발령.
- 2)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고시 전문(23년12차).
- 3)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(23년12차).
- 4)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(23년12차)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사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